제 15 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8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함에 목적이 있다.

②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89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 간 내 등급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 가능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

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 때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 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 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

능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 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1조 (급여 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공단이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⑧ 입소 시설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운동, 간호, 생활지 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⑨ 입소시설의 급여 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⑩ 입소시설의 급여 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 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 한다.

⑪ 시설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4, 5급인 경우 3등급 기준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1등급	93,070
② 장기요양2등급	86,340
③ 장기요양3등급	81,540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 비용' 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 할 수 있다.
2. 외박 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 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 제공 기록할지에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⑫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0일 기준)

1. 식사 재료비 1식 4,000원
2. 간식비 1일 2,000원
3. 상급침실비용(1인실) 1일 30,000원/ (2인실) 1일 20,000원
4. 시설 (입소) 급여는 개인 부담률 20%(경감 12%, 8%)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 (20%)	경감 대상 (12%)	경감 대상 (8%)

본인 부담금	1등급	558,420	335,050	223,360
	2등급	518,040	310,820	207,210
	3~5등급	489,240	293,540	195,690
공통 비급여	식비	360,000	360,000	360,000
	간식비	60,000	60,000	60,000
		*1일 식비 (일반) 12,000 + 2,000 = 14,000 (경관) 12,000		
합계	1등급	978,420	755,050	643,360
	2등급	938,040	730,820	627,210
	3~5등급	909,240	713,540	615,690
상급침실	1인실	· 1일 30,000원 30,000 * 30회 = 900,000 추가		
	2인실	· 1일 20,000원 20,000 * 30회 = 600,000 추가		

⑬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⑭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 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수 있다.

제92조 (급여 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100분의 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 비용은 '을' 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 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 급여 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 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93조 (비용 수납) ① 비용 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 서류를 제공한다.

② 입금계좌 시에는 “신협 131-018-197221 (예금주: 성루카노인전문요양센터) ” 으로 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수납한다.

④ 급여 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5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은 제외)

제94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제공하였을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①, ②항에 의하여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 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4. 이용 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9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 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9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 :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 인수인은 계약 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본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 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 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②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대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 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써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에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9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간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8조 (퇴소 및 전원)

① “갑”은 본 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센터의 소정의 퇴거 신 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단, 사유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과 “병”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을”또는 “병”이 퇴소나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갑”은 지체없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9조 (사망)

① 보호자가 없는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 절차는 거주 어르신과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센터에서 결정하며, 거주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④ 거주 어르신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나 현저 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제100조 (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 입소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 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 어르신의 의견 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 한다.

2. 센터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류금품 처리는 입 소자의 유언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자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을 때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른다.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인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가 부양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고, 국가 또는 센터가 부양 의무 없는 제3자로서 어르신을 부양하였으므로 부양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유류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로 귀속하여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